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폐업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
업 종

[ ]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

[ ]음반·음악영상물배급업

[ ]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

[ ]노래연습장업

영업 폐지일

년 월 일

폐 지 사 유

등록증·신고증의 분실사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노래연습장업: 등록증 2. 음반·음악영상물 제작(배급)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: 신고증 ※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,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